

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I 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732호
2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3. 제출일자 : 2019. 5. 24.
4. 회부일자 : 2019. 5. 30.

II . 제안이유

- 소속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“겸임”임용에 관한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인사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

III . 주요내용

1. 소속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겸임에 관한 행정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며(안 제5조제3호),
2. 부설학교의 지방공무원 겸무에 관한 임면 권한을 소속학교장 위임 사항에서 삭제함(조례 제6조제2호)

IV. 참고사항

1.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, 「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」

2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안건 참고).

3. 기 타

입법예고(2019. 4. 30.~ 5. 14): 의견 없음.

V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김창범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24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732호로 제출되어 2019년 5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개정조례안은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0조의3 등에 따라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“겸임” 임용에 관한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-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‘부설 학교의 지방공무원 겸무에 관한 임면’ 사항을 교육장에게 위임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.

이와 관련하여 현행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0조의3 및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7조의5, 그리고 「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」에서¹⁾ 지

1) 「지방공무원법」

제30조의3(겸임) 직위와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특정직공무원, 특수 전문 분야의 일반직공무원, 대학교수 등 교육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·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·단체의 임직원과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.

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

제7조의5(겸임)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.

1.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

2.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을 임용하는 경우

3.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
② 제1항에 따른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하며,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
1. 고등학교 이상의 각급 학교의 교육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일반직공무원 간

2. 연구직렬 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다른 일반직공무원 간

3. 일반직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사립의 전문대학·대학·대학원 및 그 부설연구소의 교수(부교수, 조교수를 포함한다)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,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직원 간

4. 일반직공무원과 직무내용이 관련이 있는 다른 일반직공무원 간

③ 겸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,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④ 겸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겸임하게 할 때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서 임용하여야 한다.

방공무원의 겸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현재 고등학교를 제외한 각급 학교의 지방공무원 전보 등의 인사관련 권한이 교육장에게 위임되어 있는바, 동 개정조례안에서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'겸임' 임용에 관한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은 상위법령 및 현행 인사체계와의 일관성 확보 측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.

- **이상으로 「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지급 조례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**

「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(행정안전부 예규 제72호)」

4. 겸임(법 제30조의3, 임용령 제7조의5)

- 겸임은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,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을 임용하는 경우,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가능
※예 : 초등학교 행정직·기술직공무원이 병설 유치원의 행정직·기술직 업무 겸임 가능
-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가능, 겸임기간은 2년이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

관계 법령

지방공무원법

[시행 2019. 4. 17.] [법률 제15801호, 2018. 10. 16., 일부개정]

제30조의3(겸임) 직위와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특정직공무원, 특수 전문 분야의 일반직공무원, 대학교수 등 교육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·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·단체의 임직원과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.

지방공무원 임용령

[시행 2019. 1. 1.] [대통령령 제28705호, 2018. 3. 20., 일부개정]

제7조의5(겸임)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.

1.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

2.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을 임용하는 경우

3.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
② 제1항에 따른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하며,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
1. 고등학교 이상의 각급 학교의 교육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일반직공무원 간

2. 연구직렬 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다른 일반직공무원 간

3. 일반직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사립의 전문대학·대학·대학원 및 그 부설연구소의 교수(부교수, 조교수를 포함한다)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,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직원 간

4. 일반직공무원과 직무내용이 관련이 있는 다른 일반직공무원 간

③ 겸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,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④ 겸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겸임하게 할 때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서 임용하여야 한다.